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10. 17.
4. 회부일자 : 2018. 10. 29.

II. 폐지이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한 응시자 비용 부담 완화 및 교육평등 이념 구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폐지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별첨 3)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3.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협의 완료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8. 9.12.~ 10.2.)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2)

○ 교육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4호로 제출되어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응시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교육청 세입(자체수입) 측면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71년 8월 13일에 서울특별시조례 제671호로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용하여 왔습니다.
- 그 후 동 조례는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응시수수료 징수 범위가 조정되어 왔는바, 2010년 12월 30일 동 조례 개정 시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가 면제되었고¹⁾,
그 후 2014년에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저소득층(수급자 등)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면제된 바 있습니다.²⁾

1)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060호, 2010.12.30., 일부개정]. 참고로 당초 검정고시 관련 명칭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자격으로 각각 구분하여 명시되었으나, 이러한 명칭 구분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 모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그 명칭이 일원화되었음.

-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지원자는 2018년 현재 11,743명으로('16년 대비 2,483명 감소)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통한 세수는 1억 6천 3백만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자체수입 1,640억 8천 1백만원의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교육청 세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표1]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자수	응시수수료	지원자수	응시수수료	지원자수	응시수수료
초졸	994	면제	917	면제	791	면제
중졸	2,939	면제	2,514	면제	2,492	면제
고졸	10,293	198,360	8,606	165,160	8,460	162,620
합계	14,226	198,360	12,037	165,160	11,743	162,620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를 위해 카드리더기 사용 계약, 현장접수 일용직 모집, 수수료 면제자 확인, 수수료 정산 및 입금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³⁾

2)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610호, 2014.1.9., 일부개정]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관련 행정업무

고졸 응시수수료 관련접수 및 행정 업무 절차	비 고
응시수수료 징수 관련 카드리더기 회사 계약 체결	절차 생략(예산 절감)
현장 접수 응시수수료 징수 일용직 요원 모집(2명) ▪ 소요예산: 1회당 기준 금800,000원	절차 생략(예산 절감)
온라인 고졸 접수자 중 수수료면제자 확인 작업 및 처리 ▪ 파악 일수: 10일 정도 소요 ▪ 처리 작업: 증빙서류 확인 및 수수료 면제 처리	절차 생략(업무 감소)
온라인 고졸 응시수수료 징수 처리 작업 ▪ 현장 및 온라인 응시수수료 정산 작업 ▪ 이니시스(전자결제업체) 응시수수료 청구 및 수수료 납부 ▪ 에듀파인 수수료 징수 결제 ▪ 은행 수수료 입금처리	절차 생략 (예산 절감 및 업무 감소)

- 이와 같이 동 응시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동 조례안의 폐지로 교육청이 입을 수 있는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 대한 검토

- 서울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8년 기준 8,460명으로 이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19세 미만 60세 이상 응시자는 각각 5,296명, 47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8.2%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연령별 지원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2세이하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2016년	3	5,802	2,114	539	468	932	435	10,293
2017년	9	5,110	1,500	475	370	713	429	8,606
2018년	1	5,295	1,194	403	330	760	477	8,460
합 계	13	16,207	4,808	1,417	1,168	2,405	1,341	27,359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교육기회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19세 미만 응시자의 경우 퇴학, 미진학 등 다양한 이유로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는 이들에게 학업복귀 및 학력획득을 위한 하나의 교육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도교육청 마다 응시수수료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면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권고하였습니다.⁴⁾

[표3] 교육청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교육청	응시수수료	교육청	응시수수료
경기	2013.11 .7. 면제	경북	1인당 10,000원
강원	2015. 7.31. 면제	인천	1인당 10,000원
충북	2017.12.29. 면제	세종	1인당 10,000원
전북	2012.10. 5. 면제	대구	1인당 10,000원
제주	2011. 5.18. 면제	울산	1인당 10,000원
전남	1인당 6,000원	부산	1인당 10,000원
대전	1인당 8,000원	광주	1인당 14,000원
충남	1인당 10,000원	서울	1인당 20,000원
경남	1인당 10,000원	※ 서울과 전남은 최대 3.3배 차이	

○ 따라서 동 폐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 및 시·도 교육청 간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한 교육복지의 실현 측면에서 동 조례안 폐지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국민 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92, 2018.6.1.)

관 계 법 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8.3.1.] [교육부령 제148호, 2018.2.26., 일부개정]

- 제42조(수수료)**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